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신설〉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3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신설(안 별표 제97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1)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구매자금 등 지원 받은 수출기업으로부터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부담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략수출상생기여금 관련: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조(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
5.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7.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수출금융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2.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이 실제 집행된 시점마다 집행금액(단, 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으로 본다)과 1천분의 10(단, 제3호는 1천분의 50으로 본다)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매자금용 지원

2.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여금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기여금과 별개로 부과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그밖에 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여금의 납부 등) ① 제2조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융지원 승인시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융지원을 집행시 그 날 또는 금융지원의 집행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기여금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내역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유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의 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부의무자가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기여금 및 제5항

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다만,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한다.

⑧ 재정경제부장은 기여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기여금의 부과·징수·납부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은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징수하여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수출상생기여금(안) 개요]

- (목적)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부과·징수) 재정경제부장관
- (부과대상) 구매자금융, 낙찰조건부 지원(EDCF), 방위산업 수출산업협력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 (귀속) 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
 -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하되, 일부 비율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전입 가능
- (부과금액)
 - 집행금액에 1천분의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

[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 개요(「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3조 및 제4조)		제3조(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
수출 금융 지원 계정	수출금융 지원계정의 재원 (안 제5조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u>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u> 5.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7.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수출금융 지원계정의 용도 (안 제5조제2항)	1.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2.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산업 생태계 지원 계정	산업생태계 지원계정의 재원 (안 제5조의2 제1항)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5. <u>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u>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산업생태계 지원계정의 용도 (안 제5조의2 제2항)	1.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전략수출’이란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의미²⁾하며,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님.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확실성 증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방위산업 및 원자력·에너지 등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기업 간의 기술·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의 정책금융 지원 역량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및 절충교역(수출산업협력 제공)³⁾ 등을 함께 요구함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

2)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략수출”이란 제1호에 따른 수출로서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말한다.

3)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11조제1항의 “구매자금융”이란 외국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 협력을 말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폴란드 방산 수출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현행 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된 바 있으며⁴⁾, 향후 원전 및 에너지 분야의 초대형 수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금융 자원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구매자금융,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이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는 정책금융을 통해 수주가 성사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1~2차 공급업체 등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금융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수출 성과의 과실을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시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방안으로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자원 마련 방안으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2026년 1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4) 2024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였음.

에서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여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중견 기업 등에 투자하여 산업생태계로 환류하는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1.) 中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련]

【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강화 】

-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특별법 제정, '26.上)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해 산업생태계로 환류

【 전략수출금융기금 구조 】

- (재원) 정부 출연·보증 + 정책금융기관 출연 + 수혜기업 기여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기여금) + 정부납부기술료(수출연계 기술료 등 검토)
- (기금운용) 기금 및 이를 토대로 창출한 레버리지(자펀드)를 통해 수출금융(대출·보증) 및 생태계 발전(지분투자)에 자금 운용
- (수출금융) 수은·무보 지원이 곤란한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
- (생태계발전)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에 특화*해 펀드를 통한 해당 기업 또는 대·중·소 합작법인 지분투자

* 수입대체, 기술경쟁력 확보 또는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큰 지식재산권 확보 등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⁶⁾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에너지·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

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 안정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성과의 산업 생태계 환류를 통한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수주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진화되는 상황에서 고위험·장기 프로젝트의 금융 공백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지향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⁷⁾,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징수대상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다만, 원전·방산·첨단 제조·신에너지 및 플랜트 분야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납부의무자가 모호해질 우려도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사업 유형 및 계약 구조별로 납부의무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징수대상별 산정기준]

구분	관련 조항	산정기준·요율
구매자금융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11조제1항의 “구매자금융”이란 외국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금액에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
낙찰조건부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낙찰조 건부 지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이 참 여하는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의 자국민 낙찰조건 부 양허성 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국민의 수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낙찰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이하 “낙찰조건 부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도국 정부 등의 지원요청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방위산업 수출산업협 력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 출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 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2. 구매국으로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 교역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국과의 협의를 통한 반대 급부 간의 상호 감면 또는 면제 3.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계약상 대방이 수출산업협력을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한 구매국과의 협의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에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

또한, 부과요율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수출산업협력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의 경우 일반 지원(1천분의 10)보다 5배 높은 1천분의 50 이내의 요율이 적용되는바, 이는 고도화된 기술이전 및 협상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지원 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요율의 차등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기여금이 모두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통합 귀속되어 방산·원전·에너지 등 기금 전체 지원 대상의 공통 재원으로 활용되는바, 타 산업 대비 5배 고율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한 부담금에 상응하는 개별적 효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타 산업 분야를 교차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타 분야 수출기업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해당 재원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우선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계정을 분리하거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막대한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전략수출금융의 특성상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징수된 재원을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 투자 등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 목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의 부담금은 현행법 별표에 규정된 부담금과 목적 및 부과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은 아니지만 현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⁸⁾ 등의 개별법에 따라서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신설될 경우, 국가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 업체는 각 개별법에 따른 기술료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기여금을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두 번의 지출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임.

특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기술료의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도록

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⁹⁾ 비록 양자의 법적 성격은 상이하나, 납부 주체와 재원의 최종 귀속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업 측에 가중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제4항¹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감면에 대한 사항을 활용하여, 기술료 납부 실적 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일부 경감해 주는 등 기업의 수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임.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

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의2(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정부납부기술료의 범위(제5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받은 기술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기술료

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로서 동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납부받은 기술료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된 기술료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기술료

16.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로서 동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된 기술료

18. 「농촌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료

1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④ 그밖
에 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¹¹⁾ 동사안의 경우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히 대규모 전략수출지원은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수혜를 입는 구조인 만큼, 일반 국민 전체의 담세로 운영되는 조세보다는 금융 지원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특정 집단에게 경비를 분담시키는 부담금 방식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¹²⁾,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글로벌 수주 경쟁 대응 및 수출 산업 생태계 강화는 지속적인 국가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금의 운용 성과와 수출 시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담금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는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1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¹³⁾을 제시하고 있음¹⁴⁾.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수출상생기여금의 납부 의무자인 ‘구매자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국가가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 대규모 수출금융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창출하는 집단으로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정 집단으로서의 집단적 동질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여금의 용도인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 투자 등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을 주도하는 납부자 집단의 경제적 활동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됨.

그리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 및

13)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4)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 공적 자산의 집중적인 투입 없이는 성사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바,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 아래 실질적인 수주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해당 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집단적 책임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조성된 기금이 다시 전략수출 전용 금융으로 수출기업에게 환원되어 추가적인 수주 기회를 창출하고, 1·2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탄탄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국적으로 납부의무자인 대형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집단적 효용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및 집단적 효용성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수출기업이 국가적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전략수출금융 강화를 목적으로 구매자금융 등의 간접적 혜택을 보는 기업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정당화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매자금융 등의 수혜기업(부과대상자)과 전략적 수출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사용용도) 간 밀접한 관련성·책임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또한, 동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건설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납부의무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부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정부에 납부할 경우 이전에 다른 정부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여금의 부과 대상에서 원전 공기업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中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징수대상에 대한 부처 수정의견(안)]

현행(제정안)	개정안(예시)	비고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이하 “ 납부의무자 ”라 한다)는 해당 지원이 실제 집행된 시점마다 집행 금액(단, 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산업 협력 지원 금액으로 본다)과 1천분의 10(단, 제3호는 1천분의 50으로 본다)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하 “ 기여금 ”이라 한다)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① ----- -----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수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자(이하 “ 납부의무자 ”라 한다 ----- ----- ----- ----- ----- -----.	재경부 의견
<단서 신설>	다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업부 의견

한편, 본 개정안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97.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 기여금

문의처
02)6788-5153